

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57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15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8월 12일 이영실 의원의 14명
2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9월 3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영실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시민과 여성관련시설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의 부과·징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또한 서울여성플라자의 연수시설이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수시설 관련 감면규정 및 이용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시설 이용자를 교육과정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규정함 (안 제18조제1항)
- 여성플라자의 숙박(연수)시설 이용감면 사항 및 이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함. (안 제19조제1항 및 안 별표 6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여성관련시설의 이용료 부과·징수의 대상인 이용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서울여성플라자의 공간 변경사항을 이용료 감면조항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성관련시설의 이용료 부과·징수 및 감면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임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□ 여성가족시설 이용자 규정 확대 (안 제18조제1항)

- 개정안은 현행 여성관련시설의 이용자의 개념이 “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”으로 규정되어 교육과정과 부대시설을 동시에 모두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, “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”로 바꾸어 교육과정이나 부대시설을 각각 이용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여성관련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그 개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.

현	행	개	정	안
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		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	--	
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		-----		<u>또</u>

<p>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는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- 이는 지난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의 규정된 바와 달리 다수의 이용자들이 교육과정이나 부대시설(연수숙박시설)을 각각 별도로 이용하고 있어 조례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□ 여성플라자 연수시설 관련 감면 내용 삭제 (안 제19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<sup>1)</sup>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

1)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

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개정안은 여성플라자의 이용료 감면 조항의 단서조항에 명시된 연수(숙박)시설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, 이는 여성플라자의 공간부족에 따라 여성플라자 3~5층에 위치해있던 연수(숙박)시설이 2020년 9월 개관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으로 옮겨감에 따라 여성플라자 공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이용하는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 : 기본시설</p>	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</p>

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<p>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. <u>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u></p> <p>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. <u>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----- . &lt;단서 삭제&gt;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 . &lt;단서 삭제&gt;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**3 종합 의견**

- 동 개정안은 여성관련시설의 이용료 부과·징수 및 감면 사항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,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료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김생환, 김경영,  
권영희, 김경우, 최 선,  
임만균, 송아량, 이승미,  
이은주, 박기재, 전병주,  
양민규, 박순규, 봉양순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시민과 여성관련시설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의 부과·징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또한 서울여성플라자의 연수시설이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수시설 관련 감면규정 및 이용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 이용자를 교육과정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규정함 (안 제18조제1항)
- 나. 여성플라자의 숙박(연수)시설 이용감면 사항 및 이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함. (안 제19조제1항 및 안 별표 6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여성플라자의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(제18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기본시설 이용료

구 분	기준금액	비 고
국제회의장 (전체)	360,000원 ~ 500,000원	1. 1회 단가로서, 1회란 오전(10:00~14:00), 오후(14:00~18:00), 야간(18:00~22:00) 중의 하나임 2.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·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아트홀	280,000원 ~ 400,000원	
회의실	5,000원 ~ 50,000원	1. 시간당 단가이며,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0,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.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3.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세미나실	10,000원 ~ 30,000원	
시청각실	20,000원 ~ 40,000원	
강의실	5,000원 ~ 30,000원	

※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이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.

2. 체육시설 이용료

구 분	기준금액		비 고
	시설이용	금 액	
수 영	1개월	40,000원 ~ 80,000원	
헬 스	1개월	40,000원 ~ 80,000원	
에어로빅	1개월	40,000원 ~ 60,000원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이용하는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 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. <u>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u></p> <p>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: 기본시설</p>	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-- ----- <u>또</u> <u>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단서 삭제&gt;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. 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

② (생략)

-----  
--. <단서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